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	<h1>보 도 자 료</h1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5. 12. 14(월) 총 4매 (본문 3)	
	•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, 사무관 이정현, 주무관 장영기 • ☎ (044) 201-3320, 3332		
	•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, 주거급여팀장 나기호, 사무관 조민우, 문기성 • ☎ (044)201-3360, 4740		
보 도 일 시	2015년 12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5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및 수요자 전달력 높아진다

- 「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」 12.15일 국무회의 의결 -

- 국토교통부(장관: 강호인)는 금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「주거기본법*」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* 주거기본법 : 주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권 신설, 주거기준 설정,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(법률 제13378호, 2015.6.22 제정)

- 제정안은 현행 「주택법 시행령」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,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최저주거기준,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·정비하는 한편,
 -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,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·채용·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다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국토부장관

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'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' 및 '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'을 포함하도록 하고,

- 10년 단위의 시·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,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.
- 둘째,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, 주거환경 선호도,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.
- 셋째,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·운영·관리 등의 정보 제공, 주거복지 관련 기관·단체의 연계 지원,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추가하였고,
 - 국토부장관 등이 전문성 및 조직·인력을 갖춘 기관(LH, 시군구 등)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넷째,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, 주거급여 정보시스템, 「주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하고,
 - 정보체계 내 구축된 주거복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12.1일 개통한 '마이홈 포털(주거복지정보체계)'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.
- *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·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위탁
- 다섯째,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·교육을 위하여 국가,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* 운영기관(또는 교육기관)의 교육·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 - *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 발생

-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·배치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, 공공임대주택 운영·관리,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,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.

□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 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,

-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한편,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은 같은 법률과 함께 12.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(☎ 044-201-33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저출산·고령화, 1~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,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(주택보급률 103.5%, '14년말 추계)
 - 그러나, 「주택법」은 주택건설·공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,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한계
- 이에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 필요성 제기('14.12.23, 여야 합의)

□ 주요내용

- ① (주거권 신설) 국민은 법령에 따라 물리적·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
- ② 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·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할 책무를 부여
- ③ (주거종합계획 수립) 국가·지자체가 10년단위 및 1년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 포함
- ④ (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국가·지자체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, 최저주거기준·유도주거기준 등 주거정책 중요사항 심의
- ⑤ (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)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, 이 법에 부합되도록 규정
 - * 주택법, 임대주택법·공공주택법, 공동주택관리법, 주택도시기금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주거급여법, 주거약자 지원법,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지원법 등
- ⑥ (주거기준)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및 그보다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인 유도주거기준 규정
- ⑦ (주거복지체계)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,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,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포털 구축

참고 2

주거복지정보체계 : 마이홈포털('15.12.1일 오픈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주거급여,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·실시에 따른 정보의 분절 및 복잡성 증가로 국민의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저하
- 한편,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구축·운영 중이나 종합적 주거복지정보 제공은 곤란
- * 전국 약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정보(위치·평형, 입주자격·임대료)를 국민에 제공

□ 개선 내용

- 분산된 각종 주거복지정보를 국민들이 생애주기별·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



- 임대주택포털을 공공·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, 개편 주거급여,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마이홈포털로 기능 확대·발전
- *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, 공동주택관리(k-apt), 주거급여정보시스템, 주택기금 포털(국토부) 등 주거복지 관련정보의 취합·분류·가공을 통해 종합정보서비스 제공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본 서비스 오픈 후에도 부족한 정보 등 관련자료를 연말까지 추가 등록하고,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('16년~)
- 고객 상담 통합 관리(마이홈 포털, 콜센터, 오프라인 상담센터) 및 온라인 상담지원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

□ 추진 배경

-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(공급→복지) 및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분야 확대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
 - 특히, 기존 사회복지사 중심의 복지 집행체계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 발생
- ⇒ 주거복지사를 도입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접근성 향상

□ 주요 내용

-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, 주거복지 업무에 배치
 - (자격검정) 국가공인 민간자격* 방식으로 인력 배출('15.12, 공인 완료)
 - *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 발생(주거복지사 자격은 (사) 한국주거학회에서 운영)
 - (양성과정) 주거복지, 주택관리, 사회복지 등 관련 교육과정 이수·현장실습(지자체, 임대주택 단지)·시험검정 등의 절차를 통해 배출
 - (업무영역) 주거급여 주택조사, 취약계층 실태조사, 저소득층 주거상담, 정책 대상자 발굴, 주거환경개선, 지역사회 주거복지 N/W 구축 등 담당
 - (배치·활용) 영구임대단지, 주거복지센터* 등에 우선 배치('16년), 지자체 주거복지팀, 사회복지관, 비영리단체 등에 확산 유도('17년 이후)
 - * 전문성과 조직·인력을 갖춘 기관(LH 등)에 설치·운영 위탁, ① 임대주택의 입주·운영 등 정보제공, ② 주거복지 관련 기관·단체 연계, ③ 주택개조 등 지원

□ 기대 효과

-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·배치를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, 저소득층 등 수요자 접근성을 향상

□ 추진 배경

- 주거급여 개편,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분야 확대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대두
-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저소득층, 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(주거기본법에 근거 마련)

□ 주요 기능

-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·상담 및 주거서비스 신청, 광역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·민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
- 중장기적으로 교육·육아 및 자립지원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, 장애인·고령자 등에 대한 생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

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·상담 (마이홈 상담센터)	주거복지 관련 기관, 단체의 연계 지원	주거복지 관련 생활지원 및 교육·홍보 등
주거지원 프로그램·시설 정보제공, 자격요건 등 상담 * 공공임대주택, 주거급여, 행복주택, 뉴스테이, 기금대출 등	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민간 사회공헌 자원 유치 및 연계	취약계층 돌봄서비스, 자립지원, 교육·육아 등 생활지원사업 기타 교육·홍보
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의뢰 (→ 지자체) 긴급주거지원 연계 (→ 지자체 등)		

□ 향후 계획

- 연내 36개 주거복지센터 지정·운영('15.12월),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지정 독려('16년~)
- * (주거기본법 시행령) 국토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을 LH에 위탁, 지자체는 LH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

□ 개 요

-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정책지표로서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

□ 추진 배경

-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완화되면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는 「주거기본법」 제정('15.6월)
- 특히, 국민의 주거수준을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“유도주거기준”을 설정·공고하도록 규정(제19조 신설)
 - * (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) 16.6%('06년) → 12.7%('08년) → 10.6%('10년) → 7.2%('12년) → 5.4%('14년) 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

□ 유도주거기준 마련 방향

- 유도주거기준은 단순한 주거권 확보를 넘어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표이므로
 -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, 활동반경 등 인체공학적 측면 뿐 아니라, 생활양식, 주거환경, 편의시설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
- 유도주거기준 도입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*이 제기되었던 만큼
 - * 주거기본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 명칭 설정과 관련하여 목표주거기준(이미경의원), 유도주거기준(김성태의원) 등 다양한 견해 존재
 - 한국의 주거실태 분석에 기반을 둔 '수준' 개념에 더하여 의학, 공학, 건축 기준 등과 선진국 사례, 우리나라 주거실태 파악 등 심도 깊은 분석을 추진할 계획
- 이외에도, 전문가 자문,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현실을 반영한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할 계획